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51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문진석·박정현·박성준
이정문·김문수·권향엽
조인철·최혁진·김교홍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조정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상담·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등).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전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 ----- ----- ----- ----- ----- -----사람 또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
2. ~ 11. (생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① (생략)	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 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	②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 -----. 1. 「<u>한국환경공단법</u>」에 따른 <u>한국환경공단</u> 2. 「<u>한국토지주택공사법</u>」에 따른 <u>한국토지주택공사</u> 3.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 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증 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 정하는 기관</u> ③ (현행과 같음)
---	---